

10. 근무성적 평정시 직급별, 평정요소별 평정기준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승진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교사는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을 참고한다.

### 11.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승진규정 제26조 및 제28조의9제2항)

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 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05.25.부터 시행)

※ “특별한 사정” :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예)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일련의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시기(매년 3.1. ~ 3.31.)와 같이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인사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기

※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 근무성적평정표(합산표) 상의 조정점을 의미함

나.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점 공개 범위: 총점, 조정점, 평어, 순위

## 6 연수성적평정(승진규정 제4장)

### 1.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연수성적 (18점)	교육성적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자격연수성적	직무연수이수실적
	연구실적	연구대회입상실적	학위취득실적

※ 동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제29조에 의거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0.2.28.)(2020.03.01.시행)

연수성적 (15점)	교육성적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자격연수성적	직무연수이수실적

단, 2021. 2. 28.자 이전 연구대회 입상 실적 및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을 인정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제30495호, 2020.02.28., 일부개정)(2020.03.01.시행)

### 2. 교육성적평정(승진규정 제32조, 제33조)

교육성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 1개와 평정기준일(매년 2월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120시간 또는 18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함)성적 및 직무 연수 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연수종료일 기준 해당년도에 반영)